
주요 업무보고(별지1)

2018. 11.

기 획 조 정 실

별지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재정분권안 주요내용 및 향후 조치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재정분권안 발표('18.10.30.)에 따라
중점 과제별 내용과 향후 우리시 대응 전략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 지방분권 관련 정부발표 주요 내용('18.10.30.)

- **(조직자율성)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및 실·본부·국 수 확대** 지방자치법·기구정원규정
 - 인구 500만 이상 지자체(서울·경기) 부단체장 2명 확대 ※ 500만 미만 지자체는 +1명
 - 시·도 실·본부·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기구 수 한시적 확대(서울시 +3개)
 - 3급이상 정원의 최소기준만 두고 이외 사항 자율화('19년 제도개선 검토, '20년 도입)

- **(지방재정)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부가가치세법
 - 지방소비세율 10%p 단계적 인상('19년 4%p+'20년 6%p)을 통한 지방세 확충
 -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19년 15%p+'20년 10%p)으로 소방직 국가직화 지원
 -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지역별 가중치 적용(수도권·광역·시·도=1:2: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 ※ 홍익표 의원 「지방세법」(지방소비세율 11→15%) 및 「지방교부세법」(소방안전교부세율 20→35%)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우 의원 「부가가치세법」(지방소비세율 11→15%)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8.11.1.)

- **(지방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 시·도지사 권한이었던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기준 마련 등
 - ※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3건이 상임위 계류 중(추미애·김광수의원 발의 : 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정병국의원 발의 : 의원 총수 이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국정참여 제도화) '자치발전협력회의'**(당초 제2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 대통령-시도지사 간 간담회 제도화, 국가-지방 주요 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
 - 대통령(의장), 시도협회장·국무총리(공동 부의장), 관계 부처장, 시도지사, 지방4대 협의체장 등
 - ※ 자치발전협력회의의 구성·운영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 제정 예정
- **(자치사무 확대) 「지방이양일괄개정법」 제정, '자치분권영향평가'**(당초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 571개 국가사무(66개 법률)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개정법' 제정(10.26. 법안 국회제출)
 - 법령 제·개정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심사하는 '자치분권영향평가제' 도입

□ 향후 일정 및 우리시 대응 전략

-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예정) : '18. 12월 중
 - ※ 입법예고(11월) → 법제처 심사(11월) → 차관·국무회의(12월) → 국회 제출(12월)
-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 '18. 12월 중

- **정부안 확정에 따른 우리시 핵심과제별 건의사항 반영 촉구**
 - (조직/재정) 조직권 전면 자율화, 국세-지방세 6:4 개선을 위한 지방소득세율 인상
 - (지방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시도 자율권 부여
 - (사무 이양) 실질적 권한 추가 이양 및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
- **시도지사협의회, 지방4대 협의체 등과 공동으로 대정부·국회 건의**
 - 자치분권 관련 법령(법률 15, 법령 8) 제·개정시 소관 국회의원 합동 방문 건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지방분권 대토론회 개최('18.11.8. / 국회)
- **우리시와 밀접한 지방분권 주요 이슈별 공론화 추진**
 - '지방분권 릴레이 토론회'(4회, 조직·사무/자치경찰/재정/의회, '18.10.24.~11.21.)
 - 자치분권위, '시도 순회 간담회'에서 市 주요 과제별 강력 건의('18.11.16.)

□ 추진 배경

-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자율성 신장과 책임성확보를 통한 민선7기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마련

□ 주요 과제 : 4대 분야 24개 과제

분야	과제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10개 과제)	1. 주민자치 원리 강화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명시)
	2.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적극 참여할 권리 신설)
	3.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 개·폐 청구)
	4. 조례 제정, 개·폐 청구요건 완화 (인구규모별 청구요건 세분화)
	5.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 (시도: 500→300, 시·군·구: 200→150)
	6.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18세)
	7. 주민투표제도 개선 (청구대상 확대, 개표요건 폐지, 확정요건 도입)
	8. 주민소환제도 개선 (인구규모별 청구요건 세분화, 개표요건 폐지, 확정요건 도입)
	9. 주민자치회 활성화 (분권특별법 → 지방자치법 설치·운영 근거 변경)
	10.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투표로 기관구성 변경 가능)
실질적 자치권 확대 (5개 과제)	11. 국가-지방 사무배분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 의무 마련, 자치분권 영향평가제 도입)
	12.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시도 특수목적 부단체장 설치 자율성 부여)
	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14. 정책지원 전문인력 (입법, 예산 등 의정활동 지원)
	15.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4개 과제)	16. 정보공개 확대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의회 의정활동 공개)
	17. 국정통합성 근거규정 (국가-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 간 연대협력의무 신설)
	18.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 강화 (사군구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관여)
	19.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윤리특위 및 윤리자문위 설치 의무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5개 과제)	20.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시도20인, 시군구15인 이내)
	21.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시도20인, 시군구15인 이내)
	22.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기관구성·운영 규정 마련)
	23. 행정협의회 활성화 (절차 간소화, 중앙의 지원 근거 마련)
	24. 대도시 특례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

□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 ('19~'20년)

- 지방소비세율 10%p 단계적 인상, 8조 4,800억원 증가
 - '19년 4%p(3조 2,470억원), '20년까지 10%p(8조 4,800억원)
-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 장치 마련
 - 지방소비세 배분 : 현행 유지(1:2:3 지역별 가중치 5%→15% 적용)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 '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분(10%p)에서 출연
- 지방세 확충과 연계 '20년 3.5조원 내외 규모의 기능이양 추진
 - 관계부처 TF 구성해서 이양대상 사업 등 결정
-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단계적 인상, 5,351억원 증가
 - '19년 15%p(3,073억원), '20년까지 25%p(5,351억원)
 -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보전 목적으로 추진

2단계 ('21년~)

- 지방재정 근본적 제도 개편 추진
 - 국제·지방세 구조 개선,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중앙사무 추가이양 등

□ 후속조치 일정

- 1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조치는 단계적 추진
 -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 및 예산안 반영 필요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협의체(부처·자치단체·전문가) 구성·논의